

용인시 공인 조례

제정	1996. 3. 1	조례 제 11호
개정	1998. 10. 8	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1999. 4. 3	조례 제 176호
	2001. 1. 11	조례 제 311호
	2003. 3. 21	조례 제 432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2003. 12. 31	조례 제 490호
	2005. 10. 5	조례 제 644호
일부개정	2015. 7. 6	조례 제 1462호
일부개정	2017. 12. 11	조례 제 173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(직속기관, 사업소, 하부행정기관과 그 기관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)의 공인의 종류, 규격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11>

[전문개정 2015. 7. 6]

제2조(공인의 종류 및 비치·사용)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·자문기관·그 밖의 합의체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>

②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·사용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,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·사용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 “행정기관의 전용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7. 6>

④ 의결기관, 그 밖의 합의체기관은 청인을 가질 수 되,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. 다만, 합의체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합의체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>

⑤ 삭제 <1999. 4. 3>

⑥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>

[제목개정 2015. 7. 6]

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>

제4조(특수공인) ① 시장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,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② 시장,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실 전용의 공인을 비치·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“민원실 전용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·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>

③ 시장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>

제5조(규격 및 인영) ① 삭제 <2005. 10. 5>

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써야 하며, 규격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7. 6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>

[제목개정 2015. 7. 6]

제6조(각인) ① 공인에는 기관 명칭과 직위 명칭을 새겨야 한다. 이 경우에 직인과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새겨야 한다. 다만,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>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출납원,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,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③ 삭제 <2015. 7. 6>

제7조(공인의 등록) ① 공인(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)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와 이에 속한 보조기관 및 회계업무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시장에게, 하부행정기관과 이에 속한 보조기관 및 회계업무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구청장에게 신청(별지 제1호서식)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3. 3. 21, 2005. 10. 5, 2015. 7. 6>
② 제1항에 따라 본청 및 구청 공인업무 소관과장(이하 “공인업무 소관과장”이라 한다)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(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)에 등록 후 해당 공인을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와 이에 속한 보조기관 및 회계업무관계공무원의 공인은 본청 공인업무 소관과장이, 하부행정기관과 이에 속한 보조기관 및 회계업무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구청 공인업무 소관과장이 등록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7. 6>
③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)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6>

[제목개정 2015. 7. 6]

제7조의2(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(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)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② 본청 및 구청 공인업무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(별지 제2호의2서식)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③ 정보통신 소관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

2015. 7. 6〉

④ 삭제 <2015. 7. 6>

제8조(공인대장) 공인업무 소관과장은 공인대장(별지 제2호서식)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(별지 제2호의2서식)을 작성하고, 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7. 6]

제9조(인영의 보존) 공인업무 소관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(별지 제3호서식)에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3. 21, 2015. 7. 6>

[제목개정 2015. 7. 6]

제10조(공고) 본청 공인업무 소관과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1. 공인의 등록 ·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
2. 등록 ·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 · 월 · 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 · 월 · 일
3. 등록 ·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
4. 공고기관의 장

제11조 삭제 <2003. 12. 31>

제12조(재등록 및 폐기) ① 기관의 폐지, 인영 변형 등의 사유로 개각 또는 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(별지 제1호서식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공인업무 소관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7. 6>

② 공인업무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 받은 폐기 공인의 인영 및 내용을 공인대장(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)에 등재하고,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3. 21, 2005. 10. 5, 2015. 7. 6>

③ 공인업무 소관과장은 폐기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(「공공기록물

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)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, 2017. 12. 11>

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,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>

[제목개정 2015. 7. 6]

제13조(공인의 사고보고 등)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,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공인사고 보고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제14조(공인 관수자) 공인(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)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하되,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.

[전문개정 2015. 7. 6]

제15조(공인 관수방법) ① 관수자는 공인을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,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사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청 또는 구청 이외의 기관에서는 공인관리자가 이종 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② 전자공인은 제14조의 관수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[제목개정 2015. 7. 6]

제16조(공인의 날인)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>

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. 다만, 등본·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6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7. 6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1998. 10. 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9. 4. 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. 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3. 2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3. 12. 31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시보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44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7. 6 조례 제146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3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5. 7. 6>

공인의 규격(제5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센티미터)

공인의 구분	규격
1. 합의제기관의 장 청인	3.6
2. 시장, 소속행정기관의 장 공인	
가. 시장	3.0
나. 구청장	2.7
다. 읍장 · 면장 · 동장	2.4
라. 읍장 · 면장 · 동장 이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보하는 직위	2.1
마. 6급 ·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보하는 직위	1.8
3.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	
가. 징수관, 재무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부채관리관,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	2.0
나.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(수입금 · 일상경비 · 세입세출외현금 · 물품 등)	1.8
4. 철인(본청 · 사업소 · 구청)	2.0
비고 :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길이,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의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.	

[별지 제1호서식]

기 관 명		
수신자 : (참조 :) (경 유)		
제 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등록(재등록)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인폐기 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이미지관인 등록(재등록) 신청		
공 인 명		
공 인 의 종 류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,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,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공인		
등록(재등록, 폐기) 사유		
공인의 규격 및 사용예정일 규격(), 사용예정일()		
폐기대상 공인처리	폐기예정일 (분 실 일)	년 월 일
	폐기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이관,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
	폐기자 (분 실 자)	소속 : 직급 : 성명 :
비 고		
발 신 명 의		
기안자(직위/직급)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시행 우 : 전화 (), 전송 ()		서명 서명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시행일자) 주 소 : /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		검토자(직위/직급) 협조자(직위/직급)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접수일자) / 홈페이지 주소

210mm × 297mm(일반용지)

[별지 제2호서식]

공 인 대 장						
공인명						
종 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공인	관리부서			
□ 등 록 · □ 재 등 록 공 인	(인영)	등 록 일 (재 등 록 일)	년	월	일	
		새 긴 날	년	월	일	
		새 긴 사 람	주소 : 성명 및 상호 : 주민등록번호 :			
		최초 사용일	년	월	일	
		재 료				
		등록(재등록) 사 유				
		시 보 공 고	년	월	일	
비 고	공고 제	-	호			
폐 기 공 인	(인영)	등 록 일 (재 등 록 일)	년	월	일	
		폐 기 일 (분 실 일)	년	월	일	
		폐 기 사 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마멸 <input type="checkbox"/> 분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
		폐 기 방 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각 <input type="checkbox"/> 이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
		폐 기 자 (분 실 자)	소속 : 직급 : 성명 :			
		시 보 공 고	년	월	일	
		비 고	공고 제	-	호	

*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 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 표를 한다.

*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

(210mm × 297mm(보존용지(1종) 70g/m²) 또는 210mm × 297mm 한지)

[별지 제2의2호서식]

전자이미지공인대장						
공인명						
공인종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청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인		
□ 등록 ·	(전자이미지 공인인명)	등록일(재등록일) 최초사용일		년	월	일
		등록(재등록) 사유		년	월	일
□ 재등록 공인	(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인영)	관리부서				
		비고				
폐기 공인	(전자이미지 공인인영)	등록일(재등록일) 폐기일		년	월	일
		폐기사유		년	월	일
		폐기자 (분실자)	소속 : 직급 :			
		비고	성명 :			
비고 :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,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 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						

(210mm × 297mm(보존용지(1종) 70g/m²) 또는 210mm × 297mm 한지)

[별지 제3호서식]

인영부

기관명 : (년 월 일 현재)

공인명	공인의 인영	공인명	공인의 인영

[별지 제5호서식]

폐 인 대 장

공인명	신조연월일	사용개시 연 월 일	규 격	서 체	폐 인		폐인의 인영
					년월일	사 유	

[별지 제6호서식]

공 인 사 고 보 고 서

1. 사고 공인명	
2. 사고발생장소	
3. 사고내용	
4. 사고후의 조치결과	
5. 비 고	

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 ☺

용인시장 귀하